##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

발의연월일: 2024. 7. 1.

발 의 자:이달희·고동진·박준태

주호영 · 신동욱 · 서범수

김상훈 · 김석기 · 유용원

김정재 · 서천호 · 김예지

인요한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1주택(주택,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존1주택"이라 한다)만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1주택을 양도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 1.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양도 당시 기존1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 액의 합계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주택 취
	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① 1주택(주택, 「소득세
	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
	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
	에 따른 분양권 중 어느 하나
	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
	존1주택"이라 한다)만을 보유
	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가격을 한정하
	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1주택
	을 양도할 때 인구감소지역주
	택을 해당 1세대가 보유한 주
	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
	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한다.

- 1. 해당 인구감소지역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양도 당시 기존1주택과 인구감소지역주택 외의 주택(「소독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분양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